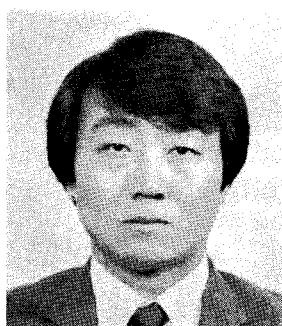


# 權利範圍 確認審判의 考察(完)

-등록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 후 19 판결을 중심으로-



沈載斗  
(辯護士)

## 目 次

1. 서
2. 권리범위확인심판
  - 가. 우리 법규정
  - 나. 일본의 경우
  - 다. 기능
  - 라.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
3. 등록권리상호간의 권리범위확인
  - 가. 서
  - 나. 학설
  - 다. 판례
  - 라. 학설 및 판례의 검토
  - 마. 사건
  - 바. 본건 판결의 검토
4. 여론
 

〈고딕은 이번 號, 명조는 지난號〉

〈前號에서 계속〉

### (2)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로는 어느 구체적 침해형태에 대하여 그것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여부 내지는 침해가 성립되느냐의 여부를 판정해 보는 것으로, 거기에 무슨 형성적 효력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순수한 기술적 감정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법률해석적용의 제도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은 특허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나, 법률해석적용의 제도로 보는 것은 특허청, 법원간의 권한분배의 원칙(즉, 권리의 부여, 박탈은 특허청, 권리범위의 해석은 법원)에 반하여 기술관료인 특허청심판관의 능력을 벗어난 업무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해석론상으로는 단순한 감정적(鑑定的) 성질을 가지는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16)

본 견해는 영, 미, 독의 제3법례에서 실현되고 있는 권한분배의 원칙과 권리에 대한 해석을 행정부에 맡길 수는 없다는 헌법적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다) 판례

우리 대법원판례중 권리법위확인심결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때 적어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감정적 성질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 일사부재리의 효력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권리법위확인심결은 권리관계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 공업소유권관계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취하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는, 직권심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증거에 관하여서도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특허법 제119조, 제116조, 실용신안법 제29조, 의장법 제53조, 상표법 제51조). 이와 같은 직권심리, 직권증거조사는 보통 그 판단이 대세적 혹은 형성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판결당사자이외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한 객관적인 진실발견이 필요한 소송절차, 예컨대 행정소송(법 제26조), 인사소송(법 제9조, 제12조), 비송사건(법 제11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하여 우리 대법원은 권리법위확인심판을 포함하여 공업소유권관계심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심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후3 실용신안권리법위확인사건 판결). 즉, "... 심결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는 관계로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08조 제 109조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심리가 채택되고 있는 실용신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자인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심결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원당시의 공지부분이 권리법위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권리법위확인심판사건에

있어서 그간 두차례의 전원합의체판결을 거쳐 공지사항제외설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만일 권리법위확인심결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면 굳이 전원합의체판결로 그 다툼을 통일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위 부정설의 입장에선 판결들이, 적극적 권리법위확인심결은 상대방의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긍정설의 입장에선 판결들이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법위에 속하게 되면 자신은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금지청구를 당하지 않는다는지 하는 논의는 전부 권리법위확인심결에 어떤 법적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라) 사건

현재의 법규정에 비추어 볼때 권리법위확인심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감정적인 성질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김인섭 변호사님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새로이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일사부재리의 효력규정에서 권리법위확인심판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특허법 제47조, 실용신안법 제29조, 의장법 제56조, 상표법 제51조), 둘째,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는 사해심결취소의 재심규정에서 권리법위확인심판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특허법 제143조, 실용신안법 제29조, 의장법 제56조, 상표법 제53조), 셋째, 소극적 권리법위확인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심결후의 선의자 보호규정이 있다는 점(특허법 제140조 제2호, 실용신안법 제29조, 의장법 제55조, 단 이와 유사한 제도인 상표법 제54조에서는 권리법위확인심판이 제외되어 있다)이다.

그리고 이 법적 효력의 내용은 다름아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기판력과 유사한 것으로서, 단지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동일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인적범위가 확장되어 있으며 반면 동일증거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보다 제한적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기타 위 학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성적 효력은 우리 법규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을 사실관계확정이라고 볼 때에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소급적 효력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보면, 권리범위확인심결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확정되면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하여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즉 다시 다툴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으며, 사실관계확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성적 효력이라든가 소급적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5) 등록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필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이 기술적 범위의 확정이라는 사실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비록 등록권리라고 하더라도 상호간 그 기술적범위를 비교,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등록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나) 그러나, 이 등록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전체의 해석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된다. 어쨌든 이점에 관한 가장 적절한 논술이라고 생각되는 송영식 변호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출발하여볼까 한다.

즉, 송영식 변호사님의 견해는 요약하자면, 등록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는 무효심판이 더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스스로의 등록권에 기하여 사용하면 그만이지 굳이 심판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록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적극적 확인심판의 경우와 소극적 확인심판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 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필자도 위 송영식 변호사님의 견해에 찬동한다. 즉 무효심판이라는 보다 유효하고도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 있음에도 중도반단적인 해결수단에 불과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즉, 아무런 등록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무권리자의 실시형태에 대하여 등록권자가 자신의 등록권리범위내에 든다는 내용의 적극적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및 선등록권리자가 후등록권리자에 대하여 이용관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적극적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무권리자의 실시형태가 등록권리자의 권리범위내에 든다면, 이는 민사상의 침해금지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고, 마찬가지로 후등록권리자의 발명 혹은 고안내용이 선등록권리의 이용관계에 있다면, 이 역시 민사상의 금지청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며,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반단적인 해결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등록권리간의 적극적 확인심판이 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 되지 못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무권리자의 실시형태에 대한 적극적 확인심판이나 후등록권리자의 이용관계에 대한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역시 이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송 변호사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이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원리가 만일 등록권리간의 적극적 확인심판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무권리자의 실시형태에 대한 적극적 확인심판이나 이용관계에 대한 적극적 확인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모순이 없다할 터인데, 만일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지간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자체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까지의 실무관행과는 완전히 배치된 입장이라 할 것이다. 즉, 현재까지의 실무운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권리범위확인심판태양은 등록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실시형태가 자신의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내용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과는 이러한 태양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가히 혁명적인 입장이고 그만큼 중대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지간에 위 세 가지의 경우는 모두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지 각 경우마다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하여 규율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즉, 무권리자의 실시형태에 대한 적극적 확인심판을 그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허용하겠다면 마찬가지로 등록권리간의 적극적 확인심판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필자로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지간에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 싶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현재까지의 확립된 실무운용관행과도 배치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전체의 구조에 비추어 가장 모순없는 해석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송 변호사님은 이 경우에 후등록권리자는 스스로의 등록권에 기하여 사용하면 그만이지 굳이 심판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로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찬동할 수 없다. 즉, 이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허용하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지만, 공업소유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권리내용인 발명 혹은 고안의 기술적 범위나 표장의 유사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실시형태 혹은 표장이 등록권리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가 우선 사실관계의 판단의 단계에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후등록권리자가, 자신의 등록권리와 유사한 선등록권리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권리가 선등록권리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고 나아가 무효의 대상이 될 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서질 않기 때문이다. 후등록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효가 될지도 모를 권리에 기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여 실시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처해있는 셈이다. 이 점에 관하여 송 변호사님은 자신의 등록권에 기하여 사용하면 그만이지 굳이 심판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자신의 등록권이 무효가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 따라서 막대한 투자를 하여 실시한 자신의 실시형태가 후에 다른 권리에 대한 침해가되어 금지당할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자신의 등록권리가 선등록권리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권적으로 확인받을만한 현저한

법적 불안이 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선등록자로서는 무효심판의 방법을 사용하면 될 터이나 후등록자로서는 무효심판은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때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위 논의를 보다 일반화하면, 등록권리 간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뿐만 아니라 무권리자의 실시형태가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침해가 될 것인지 또 후등록권자의 등록권리가 선등록권리의 이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무권리자 혹은 후등록권리자의 입장에서도 공권적으로 확인하여 볼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며 이의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생각된다. 즉,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 결론

(1) 일반론으로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간에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결국 등록권리자 대 무권리자, 선등록권리자 대 후등록권리자의 관계에서 등록권리자나 선등록권리자는 바로 침해금지소송이나 무효심판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우리 공업소유권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무권리자나 후등록권리자가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할 법적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2) 따라서, 등록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반면에 등록권리간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바) 본건 판결의 검토

이제 본건 판결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본건 판결의 결론에는 찬동하나 그 추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 본건 판결의 결론과 필자의 견해는 우연히 일치를 보인 것 뿐이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완전히 서로 다르다. 필자로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사실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등록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단지 확인의 이익이 측면에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될 수 없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것임에 비하여, 본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확인의 이익은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등록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효심판과의 관계에서 모순을 낳으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과의 관계에서 모순을 낳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2) 본건 판결을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 우선 우리 대법원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등록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문제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다른 이론적 근거에 기하여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으며 입장의 통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루 속히 통일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나)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을 권리관계의 확정이라고 보면서도 상대방의 등록권리가 자신의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상대방의 등록권리가 무효확정되기 이전에는 항상 자신의 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없다고 봄이 논리적이라 할 것이

다.

다) 본건 판결은, "...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극적 확인심판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소극적 확인심판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선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과 전혀 동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적극적 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생긴다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건 판결이 명확히 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미루어 추측컨대는 아마도 소극적 확인심판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심결주문자체가 적극적으로 선등록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각심결의 효력은 적극적으로 선등록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따라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후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 데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자극히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소극적 확인심판의 기각심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극적 확인이 이루어진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 확인심판이 기각된 것은 결국 상대방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심결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채권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반대 당사자로부터 채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면 이는 동일한 소라고 하여 중복 제소금지에 해당되어 각하된다는 점과 케를 당되어 각하된다는 점과 케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점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 4. 여론

지금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에 관하여 약간 고찰하여 보았다. 그 실제기능은 상당히 중요함에 반하여 그 본질 및 효력을 포함하여 수미일관한 이론정립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 이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의 금지소송으로 해결하게 함이 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주〉

주1) 網野誠, わが國の工業所有権法における審判制度の沿革, 日本工業所有権法 學會年報 第5號

주2) 網野誠, 위 논문.

주3) 日本特許廳, 工業所有権法逐條解說, 제 193, 194면.

주4) 東京高等裁判所 소화 37. 8. 28. 선고 판결 및 最古裁判所 소화 43. 4. 18. 선고 판결 : ジコリスト, 特許判例百選(第2版), 제 118면.

주5)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후10판결, 1969. 2. 1. 8. 선고 68후40판결, 1973. 10. 10. 선고 73후45판결 등.

주6)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후16판결, 1969. 3. 4. 선고 68후38판결, 1970. 7. 24. 선고 70후19판결 등.

주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1후60판결, 1987. 9. 8. 선고 86후99판결, 1987. 9. 8. 선고 85후114판결 등.

주8) 송영식 외2인 저, 지적소유권법, 1987, 육법사, 제 376면 이하.

주9) 송영식, 권리범위확인 심판제도에 관한 판례검토(하), 법률신문 1987. 1. 5. 자.

주10) 임석재, 권리범위확인 심판제도에 있어서 당면한 운용상의 문제점들, 공업소유권 논문집 제1집 제 262면 이하.

주11) 김인섭, 권리범위확인 심판제도의 문제점, 사법행정 1980. 9.

주12) 송영식, 위 논문.

주13) 정인봉, 특허법개론, 1986. 법문사, 제 595, 596면.

주14) 양승두, 공업소유권법, 1984, 법경출판사, 제 313면.

주15) 김인섭, 위 논문.

주16) 송영식, 위 논문.